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4. 1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4월 2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18년 4월 13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환경과장 이윤우

가. 제안이유

공공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명시하고, 「하수도법」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행기간 내에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 조건 규정 신설
(안 제9조제5항)
- 수수료 가산금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2조)
-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삭제(안 제19조)
- 기타 조항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정비

3. 검토보고 (신준호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의무에 대한 사항을 공공대행사업인 ‘분뇨 수집·운반 사무’에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
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가. 안 제9조제3항의 대행업체 재계약 조건인 특별한 결격사유 여부는 「하수도법」의 결격사유인 대행업체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·중복되어 삭제하고,
 - 나. 안 제9조제5항은 대행기간내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 조건을 명시하였음.
 - 다. 안 제12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 수수료 가산금 내용은 상위법에 별도 위임규정이 없어 삭제하였고,
 - 라. 안 19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별지 제5호 및 제9호 서식은 과태료 부과 징수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출력되는 서식 사용으로 삭제하였음.

- 검토의견은
 - 그동안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분뇨수집·운반 대행 사업에 대하여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되어 있어, 대행계약기간 내에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재계약 조건을 명시한 사항으로

○ 정화조 업무의 사회적 기업화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민의 이익과 사회적경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취약 계층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향후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구청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 참여를 장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